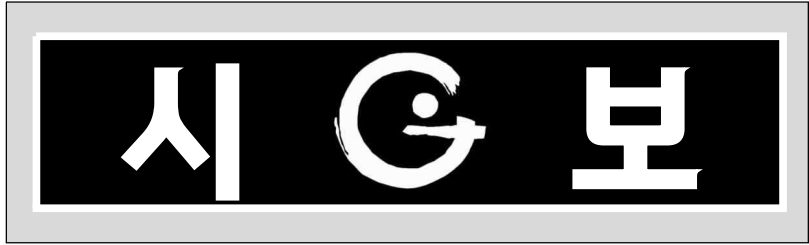




광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## 제17호 2026. 4. 29.(수)

### 조 례

광양시 조례 제2311호  
 광양시 조례 제2312호  
 광양시 조례 제2313호  
 광양시 조례 제2314호  
 광양시 조례 제2315호  
 광양시 조례 제2316호  
 광양시 조례 제2317호

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1  
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9  
 광양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13  
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..... 16  
 광양시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
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..... 24  
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..... 27

### 규 칙

광양시 규칙 제980호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..... 30

### 규 정

광양시 규정 제473호  
 광양시 규정 제474호

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..... 44  
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..... 46

### 고 시

광양시 고시 제111호

덕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.. 48

### 공 고

광양시 공고 제1021호  
  
 광양시 공고 제1061호  
 광양시 공고 제1065호  
  
 광양시 공고 제1075호

광양 성황·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  
 램 및 설명회 개최 ..... 50  
 도로지정(변경) 공고 ..... 52  
 광양 도시관리계획(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  
 램공고 ..... 54  
 구거(농업생산기반시설)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 
 통지 공시송달 공고 ..... 56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광양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
(2026. 4. 15.)에서 의결된 **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29일

광양시장 권한대행 김 정 완  
부 시 장

광양시 조례 제2311호

붙 임 :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

##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”를 “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과정”을 “등 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광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2.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
3.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, 단체,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

제3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”를 “예산과정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시 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인터넷 홈페이지”를 “시 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호 중 “예산편성 과정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출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
6.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속사업 및 기타 국도비보조사업,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



다.

1.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
2.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
3.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할 것

제16조제1호 중 “제2조”를 “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대한”을 “대한 성별·연령별·계층별 다양한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호 중 “예산편성 과정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광양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) ① 「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제25조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,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(포상)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이란 광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법령 준수 의무)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 참여의 절차와 방법 등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<u>예산편성</u>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등 예산과정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광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</u></li> <li>2. <u>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</u></li> <li>3. <u>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, 단체,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</u></li> </ol> <p>제3조(법령 준수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산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</u>-----</p>



현행	개정안
<p>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책무)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u>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</u>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</p> <p>제6조(주민의 권리)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<u>예산편성과 관련된</u>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<u>인터넷 홈페이지</u>,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.</p> <p>제8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시장은 <u>예산편성에</u>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의견 제출) 시의 <u>예산편성</u>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</p>	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책무) ----- ----- <u>예산과정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주민의 권리) ----- ----- <u>예산과정</u>----- -----.</p> <p>제7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----- ----- ----- <u>시</u> <u>누리집</u>----- -----.</p> <p>제8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----- <u>예산과정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의견 제출) ----- <u>예산과정</u> ----- ----- -----</p>



현행	개정안
<p>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.</p> <p>제10조(결과 공개)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<u>인터넷 홈페이지</u>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</p> <p>제1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----- -----.</p> <p>제10조(결과 공개) ----- ----- <u>시 누리집</u> ----- -----.</p> <p>제13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<u>예산과정</u>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제출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</u></p> <p>7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<u>제13조의2(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)</u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속사업 및 기타 국도비보조사업, 법정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의무적 경비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.</p> <p>1. <u>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</u></p> <p>2. <u>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할</u></p>

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제2조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제17조(회의) &lt;신설&gt;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제23조(주민 참여 등)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5조(기능)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·집약하는 활동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것</p> <p>3.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할 것</p> <p>제1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제2조제1호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·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23조(주민 참여 등) ① ----- ----- 대한 성별·연령별·계층별 다양한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예산과정----- -----</p> <p>3.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</p>



현행	개정안
<p>3.·4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27조·제28조 (생략)</p>	<p>4.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 <p>제25조의2(광양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) ① 「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제25조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제27조(포상)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28조·제29조 (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)</p>



광양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
(2026. 4. 15.)에서 의결된 **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 
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29일

광양시장 권한대행 김 정 완  
부 시 장

광양시 조례 제2312호

붙 임 :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



##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

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2]

##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사무

분야별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및 적 용 법 률	수임기관
총 무	1. 문서보관 및 폐기(다만,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)	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	읍 면 동 장
세 무	1.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·징수	「지방회계법」 제21조	읍 면 동 장
회 계	1.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급명령	「지방회계법」 제29조 및 제47조	읍 면 동 장
	2.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	「지방회계법」 제29조 및 제47조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1조	읍 면 동 장
	3.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(읍면청사 및 부속물)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(읍면청사 신축포함)	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4조	읍 면 동 장
	4. 불용품 매각 처리	「광양시 물품관리조례」 제4조 및 제18조 「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제16조	읍 면 동 장
민원지적	1. 인감증명 발급	「인감증명법」 제14조의4	읍 면 동 장
	2.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	읍 면 동 장
	3.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 -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-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	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, 제6조의3, 제6조의5	읍 면 동 장
사회복지	1. 의료 급여증 확인 및 발급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8조	읍 면 동 장
	2. 행여사망자 처리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	읍 면 동 장
	3. 매장·개장신고의 수리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	읍 면 동 장
농림수산	1. 농지대장 발급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농지법」 제50조	읍 면 동 장
도 로	1. 접도구역 관리(고속도로 제외)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「도로법」 제20조 및 제49조	읍 면 동 장
도 시	1.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(단, 위반광고물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 등 행정지도, 보고사항에 한함)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	읍 면 동 장
재난안전	1.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, 물자의 관리 사용 등 권한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4조 및 제37조	읍 면 동 장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 2]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사무				[별표 2]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사무			
분야별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수임기관	분야별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수임기관
총 무	1. 문서보관 및 폐기(다만,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사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)	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	읍면동장	--	-----	-----	----
세 무	1.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	「지방재정법」 제62조	읍면동장	--	-----	「지방회계법」 제21조	----
회 계	1.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급명령	「지방재정법」 제67조 및 제70조	읍면동장	--	-----	「지방회계법」 제29조 및 제47조	----
	2.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	「지방재정법」 제70조	읍면동장	--	-----	「지방회계법」 제29조 및 제47조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1조	----
	3.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(읍면청사 및 부속물) 및 보종재산의 유지관리(읍면청사 신축포함)	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4조	읍면동장	--	-----	-----	----
	4. 불용품 매각 처리	「광양시 물품관리조례」 제4조 및 제18조	읍면동장	--	-----	「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」 제16조	----
민원지적	1. 인감증명 발급	「인감증명법」 제14조의2	읍면동장	--	-----	「지방자치법」 제14조의4	----
	2.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	읍면동장	--	-----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	----
	3.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 -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-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	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, 제6조의3, 제6조의5	읍면동장	--	-----	-----	----
사회복지	1. 의료 급여증 재사용 확인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8조	읍면동장	--	-----	확인 및 발급	----
	2. 행사사망자 처리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	읍면동장	--	-----	-----	----
	3. 매장·개장신고의 수리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	읍면동장	--	-----	-----	----
	4. 개인묘지 설치(변경)신고의 수리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	읍면동장	--	-----	<삭 제>	<삭제>
	5. 제3호 내지 제5호의 신고사항 유무에 관하여 부과징수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	읍면동장	--	-----	<삭 제>	<삭제>
농림수산	1. 3,300㎡이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권한 -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가이농업용 시설과 농수산물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농지법」 제36조	읍면장	--	-----	<삭 제>	<삭제>
	2.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등에 관한 권한 - 농업이주택, 농업시설, 농수산물통 및 가공시설 - 어린이놀이터,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-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장, 양식장 등 여업용 시설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농지법」 제35조	읍면장	--	-----	<삭 제>	<삭제>
	3. 농지원부 발급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농지법」 제50조	읍면동장	--	-----	1. 농지대장 발급	----
	4. 입산신고 및 허가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7조	읍면동장	--	-----	<삭 제>	<삭제>
건 설	1. 접도구역 관리(고속도로 제외)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도로법」 제20조 및 제49조	읍면동장	도 로	-----	-----	----
건 축	1.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(단, 위원회 고물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 등 행정지도 보 고사항에 한함)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10조	읍면동장	도 시	-----	「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	----
재난 안전	1. 재난응급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물자의 관리 사용 등 관한	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5조 및 제39조	읍면동장	--	-----	----- 제34조 및 제37조	----



광양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
(2026. 4. 15.)에서 의결된 **광양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  
부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29일

광양시장 권한대행 김 정 완  
부 시 장

광양시 조례 제2313호

붙 임 :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



##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

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과 대학(교)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2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
3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건축사·노무사·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3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            ② (생략)            1. <u>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 전문가</u>             2. <u>관련 사회단체 소속으로 활동중인 사람</u>  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3. (생략)            4. (생략)            5. (생략)            ③ ~ ⑦ (생략)</p>	<p>제13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1. <u>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과 대학(교)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</u>            2. <u>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</u>            3. <u>변호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건축사·노무사·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</u>           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          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          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           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

광양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
(2026. 4. 15.)에서 의결된 **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  
부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29일

광양시장 권한대행 김 정 완  
부 시 장

광양시 조례 제2314호

붙 임 :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

##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180명”을 “1,20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150명”을 “1,17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명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
총 계	1,206					
정무직 계	1					
시 장	1	1				
일반직 계	1,170					
3급	1	1				
4급	10	6	1	2	1	
5급	63	37	2	8	4	12
6급 이하	1,095					
전문경력관	1					
별정직 계	1					
6급상당 이하	1					
연구직 계	5					
연구관	0					
연구사	5					
지도직 계	29					
지도관	2			2		
지도사	27					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180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150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 (단위 : 명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 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 회 사무국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읍면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1,18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 장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,14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10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2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63</td> <td>37</td> <td>2</td> <td>8</td> <td>4</td> <td>12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1,06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상당 이하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 계</td> <td>2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관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사</td> <td>27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	총 계	1,180						정무직 계	1						시 장	1	1					일반직 계	1,144						3급	1	1					4급	10	6	1	2	1		5급	63	37	2	8	4	12	6급 이하	1,069						전문경력관	1						별정직 계	1						6급상당 이하	1						연구직 계	5						연구관	0						연구사	5						지도직 계	29						지도관	2			2			지도사	27					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206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176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 (단위 : 명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 계</th> <th>본청</th> <th>의 회 사무국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읍면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1,20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시 장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,17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1,09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상당 이하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관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연구사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직 계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관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-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지도사</td> <td>-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	총 계	1,206						정무직 계	-						시 장	-	-					일반직 계	1,170						3급	-	-					4급	-	-	-	-	-		5급	-	-	-	-	-	-	6급 이하	1,095						전문경력관	-						별정직 계	-						6급상당 이하	-						연구직 계	-						연구관	-						연구사	-						지도직 계	-						지도관	-				-		지도사	-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,1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 장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,14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0	6	1	2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63	37	2	8	4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1,06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 이하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2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2	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사	2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,20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 장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,1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-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-	-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1,09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상당 이하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관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사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직 계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관	-			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사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광양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
(2026. 4. 15.)에서 의결된 **광양시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
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29일

광양시장 권한대행 김 정 완  
부 시 장

광양시 조례 제2315호

붙 임 : 광양시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

## 광양시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광양시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되, 법 제31조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않는다”를 “아니하되, 제6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신·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활용 사업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인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6. (생략)

-----  
----- 아니하  
되, 제6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  
지 아니하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 
신·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활  
용 사업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

광양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
(2026. 4. 15.)에서 의결된 **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 
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29일

광양시장 권한대행 김 정 완  
부 시 장

광양시 조례 제2316호

붙 임 :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

##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,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파크골프”란 공원 등의 녹지공간에서 전용 클럽과 공을 사용하여 즐기는 스포츠 종목을 말한다.
2. “파크골프장”이란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거나 승인한 파크골프장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시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·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파크골프 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3. 파크골프 대회 개최 및 시민 참여 행사 계획
4. 파크골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및 신규 조성
5. 그 밖에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「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야 한다.

제5조(안전관리 등)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,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



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파크골프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할 수 있다.

1. 잔디 보호 및 보식이 필요한 경우
2. 시설의 보수·개선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정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4. 자연재해 및 날씨(혹한, 혹서, 강우 등)로 인하여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,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광양시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
(2026. 4. 15.)에서 의결된 **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 
전부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29일

광양시장 권한대행 김 정 완  
부 시 장

광양시 조례 제2317호

붙 임 :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



##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

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광양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문 및 대안 개발
2.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자문
3.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자문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.

1. 행정, 문화·관광 및 체육, 사회복지, 보건 및 위생, 도시건설, 건축, 교통, 청소 및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학(교) 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, 변호사·기술사·건축사·세무사·회계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

2. 그 밖에 의정자문이 필요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

② 임기 중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
3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7조(수당 등) ① 위원이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**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**

2026년 4월 29일

광양시장 권한대행 김 정 완  
부 시 장

광양시 규칙 제980호

붙 임 :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

##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]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(제2조 관련)

기관별 →		총	본	의	직	사	읍
직급별	직렬별 ↓	계	청	회	속	업	면
				사	기	소	동
				무	관		
				국			
총 계		1,206	704	30	195	71	206
정 무 직		1	1				
일 반 직		1,170	700	30	163	71	206
별 정 직		1	1				
연 구 직		5	2		3		
지 도 직		29			29		
정무직 계		1	1				
정 무 직		1	1				
일반직 계		1,170	700	30	163	71	206
3급 소계		1	1				
행 정		1	1				
4급 소계		10	6	1	2	1	
행 정		3	2	1			
과 학 기 술		1			1		
행 정 · 과 학 기 술		5	4			1	
행 정 · 과 학 기 술 · 농 촌 지 도 관		1			1		
5급 소계		63	37	2	8	4	12
행 정		15	15				
의 무		1			1		
시 설		2	2				
행 정 · 사 회 복 지		6	5				1
행 정 · 사 서		1	1				
행 정 · 공 업							
행 정 · 농 업							
행 정 · 녹 지		1	1				
행 정 · 보 건							



기관별 →		총	본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직급	직렬별 ↓	계	청				
		5급	행정 · 환경	2	2		
	행정 · 시설	7	6			1	
	행정 · 방송통신	1	1				
	공업 · 시설						
	공업 · 녹지						
	행정 · 사회 · 시설	3					3
	행정 · 공업 · 환경	1				1	
	행정 · 공업 · 시설	2	2				
	행정 · 농업 · 녹지	1	1				
	행정 · 농업 · 시설						
	행정 · 녹지 · 시설						
	행정 · 농업 · 농촌지도관	2			2		
	행정 · 보건 · 보건진료						
	행정 · 식품위생 · 보건진료						
	행정 · 환경 · 시설						
	행정 · 환경 · 별정	1		1			
	공업 · 환경 · 시설						
	행정 · 사회 · 공업 · 환경	1					1
	행정 · 사회 · 농업 · 녹지	2					2
	행정 · 사회 · 농업 · 해양수산	1					1
	행정 · 사회 · 농업 · 시설	3					3
	행정 · 사회 · 환경 · 시설	1					1
	행정 · 공업 · 환경 · 시설	2				2	
	행정 · 농업 · 녹지 · 시설	1	1				
	행정 · 농업 · 녹지 · 농촌지도관	1			1		
	행정 · 농업 · 시설 · 별정	1		1			
	행정 · 보건 · 식품 · 의료기술	1			1		
	행정 · 보건 · 식품 · 보건진료						
	행정 · 보건 · 간호 · 보건진료	1			1		



기관별 →		총	본	의	직	사	읍
직급별	직 렬 별 ↓	계	청	회	속	업	면
				사	기	소	동
				무	관		
				국			
	보건 · 의료기술 · 의무 · 간호	1				1	
	보건 · 의료기술 · 간호 · 보건진료	1				1	
	보건 · 의무 · 간호 · 보건진료						
<b>6급 소계</b>		<b>277</b>	<b>175</b>	<b>7</b>	<b>36</b>	<b>17</b>	<b>42</b>
행정 · 보건 · 사회복지 · 공업 · 농림 · 어업 · 수산 · 환경 · 건설 · 소방 · 안전 · 문화 · 체육 · 관광 · 정보통신	정 무 산 지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59	47	2	2	3	5
	세 무 산 지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2	2				
	사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3	3				
	공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					
	농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					
	림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					
	어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					
	업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					
	지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					
	건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					
	호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					
	료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6			6		
	경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1	1				
	설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18	17				1
	신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					
무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14	11	1			2	
지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27	18				9	
산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4	4					
서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8	8					
업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6	6					
업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16				5	11	
지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4	3			1		
산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						
경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7	4				3	
설 회 복 지 업 업 지 건 호 료 경 설 신 무 지 산 서 업 업 지 산 경 설	23	22				1	
행정 · 방 송 통 신	1			1			
행정 · 방 재 안 전	1	1					
전 산 · 시 설							
전 산 · 방 송 통 신							



직급	기관별 →		총 계	본 청	의 회 사 무 국	직 속 기 관	사 업 소	음 면 동
	직	렬 별 ↓						
6급	업	· 환 경	2	1			1	
	업	· 시 설	4				4	
	업	· 녹 지	1	1				
	업 · 농	촌 지 도 사	1			1		
	지	· 시 설	2	1		1		
	지 · 농	촌 지 도 사						
	보 건	· 식 품 위 생	1			1		
	보 건	· 간 호	1			1		
	의 료 기 술	· 간 호						
	환 경	· 시 설	1	1				
	방 송 통 신	· 시 설						
	행 정	· 세 무 · 농 업	2					2
	행 정	· 전 산 · 사 회						
	행 정	· 전 산 · 공 업						
	행 정	· 전 산 · 시 설	1	1				
	행 정	· 사 회 · 보 건	5	1				4
	행 정	· 사 회 · 간 호	2					2
	행 정	· 사 회 · 시 설	1	1				
	행 정	· 전 산 · 방 송 통 신	1	1				
	행 정	· 공 업 · 농 업						
행 정	· 공 업 · 환 경	1				1		
행 정	· 공 업 · 시 설	3	3					
행 정	· 공 업 · 통 신							
행 정	· 환 경 · 시 설	1				1		
행 정	· 농 업 · 시 설							
	행 정	· 해 양 수 산 · 시 설	1	1				
	행 정	· 농 업 · 녹 지	5	3		1		1
	행 정	· 농 업 · 지 도 사	1			1		
	행 정	· 녹 지 · 시 설	2	1				1
	행 정	· 보 건 · 의 료 기 술						
	행 정	· 보 건 · 환 경	1	1				
	행 정	· 보 건 · 식 품 위 생	2			2		



기관별 →		총	본	의	직	사	읍
직업별	직렬별 ↓	계	청	회	속	업	면
				사	기	소	동
				무	관		
				국			
6급	행정 · 환경 · 환경 연구사						
	사회 복지 · 보건 · 간호						
	전산 · 공업 · 방송 통신	1	1				
	공업 · 환경 · 시설	6	2			4	
	공업 · 환경 · 환경 연구사	1				1	
	농업 · 녹지 · 시설	1			1		
	공업 · 녹지 · 시설	1	1				
	농업 · 농촌 지도사 · 수의	1			1		
	보건 · 의료 기술 · 간호	9			9		
	행정 · 환경 · 공업 · 환경 연구사	1				1	
	행정 · 세무 · 환경 · 별정	1		1			
	행정 · 사회복지 · 농업 · 시설	2		2			
	행정 · 사회복지 · 보건 · 간호	1	1				
	행정 · 보건 · 간호 · 보건 진료						
	행정 · 통신 · 전산 · 공업	1	1				
	사회 · 보건 · 의료 기술 · 간호	1			1		
	보건 · 의료 · 의무 · 간호						
	보건 · 의료 · 간호 · 보건 진료	2				2	
	운 전	5	5				
	전기 운영 · 기계 운영	1					1
7급 소계		340	203	14	52	18	53
행	정	92	65	4	3		20
세	무	2	2				
사	회	20	9				11
복	지						



직업별	기관별 →			총 계	본 청	의 회 사 무 국	직 속 기 관	사 업 소	읍 면 동
	직	별	별 ↓						
7급	전		산	2	2				
	사		서	3	3				
	속		기	1		1			
	공		업	7	3			4	
	농		업	2			2		
	녹		지	6	3		3		
	수		의						
	해	양	수	1	1				
	보		건	3			3		
	식	품	위	1			1		
	의	료	기	4			4		
	간			5	1		4		
	보	건	진	6			6		
	환			6	6				
	시			32	28		1	2	1
	방	송	통						
	행	정 · 세	무	9	8	1			
	행	정 · 사 회 복	지	14	11				3
	행	정 · 전	산	1	1				
	행	정 · 사	서	5	5				
행	정 · 공	업	7	5			2		
행	정 · 농	업	14			3		11	
행	정 · 녹	지	1					1	
행	정 · 수	의	1			1			
행	정 · 보	건	1			1			
행	정 · 해 양 수	산							
행	정 · 환	경	2	2					
행	정 · 시	설	12	10				2	
행	정 · 기록연구사		1	1					
행	정 · 학예연구사		1	1					
사	회 복 지 · 보	건	1					1	
전	산 · 시	설	1	1					
전	산 · 방 송 통	신	1		1				



기 관 별 →		총	본	의	직	사	음
직	직	계	청	회	속	업	면
급	렬			사	기	소	동
별	별			무	관		
	↓			국			
7급	전 산 · 방 재 안 전	1	1				
	보 건 · 의 료 기 술	2			2		
	보 건 · 간 호	2			2		
	공 업 · 환 경	6	4			2	
	공 업 · 시 설	5	1			4	
	환 경 · 시 설	1	1				
	농 업 · 녹 지	1	1				
	농 업 · 수 의	3			3		
	시 설 · 방 재 안 전	1	1				
	보 건 · 약 무						
	의 료 기 술 · 간 호	3			3		
	행 정 · 전 산 · 통 신	5	5				
	행 정 · 전 산 · 사 서	1	1				
	행 정 · 공 업 · 시 설	2	2				
	행 정 · 공 업 · 해양수산	1	1				
	행 정 · 농 업 · 녹 지	3	3				
	행 정 · 농 업 · 시 설						
	행 정 · 환 경 · 공 업	2	1			1	
	행 정 · 환 경 · 시 설						
	행 정 · 농 업 · 수 의	1			1		
	행 정 · 시 설 · 학 예 연구 사	2	2				
	행 정 · 녹 지 · 학 예 연구 사	1	1				
	보 건 · 의 료 · 간 호	5			5		
	공 업 · 환 경 · 환 경 연구 사	2				2	
	공 업 · 시 설 · 방 재 안 전	1	1				
	행 정 · 세 무 · 사 회 복 지 · 환 경	3			3		
	행 정 · 공 업 · 시 설 · 환 경	1				1	
	행 정 · 공 업 · 농 업 · 시 설	3			3		
	행 정 · 농 업 · 녹 지 · 시 설	1	1				
	행 정 · 농 업 · 공 업 · 녹 지	1	1				
	행 정 · 보 건 · 간 호 · 의 료 기 술	1				1	
	행 정 · 보 건 · 간 호 · 사 회 복 지	4	1				3
	행 정 · 전 산 · 시 설 · 방 재 안 전	1	1				
공 업 · 환 경 · 방 재 안 전 · 전 산	1	1					
문 전		7	4	1	2		
선 박 항 해 문 영		1			1		



기관별 →		총	본	의	직	사	읍
직급별	직렬별 ↓	계	청	회사무국	속기관	업소	면동
8급 소계		276	138	4	48	21	65
8급	행정	51	28	1		3	19
	세무	2	2				
	사회복지	15	6				9
	전산						
	사무	4	4				
	수송	1		1			
	공업	15	9			6	
	농업	1			1		
	복지						
	보건	9				9	
	식품위생	1				1	
	의료기기	4				4	
	간호	12					12
	보건진료	2				2	
	환경						
	시설	30	20		1	2	7
	방송통신	1	1				
행정·세무	7	7					
행정·사회복지	15	9				6	
행정·사무	4	4					
행정·전산	2	2					
행정·수송							
행정·공업	2	2					
행정·농업	3			3			
행정·복지							
행정·해양수산	1	1					



기 관 별 →		총	본	의	직	사	음
직급별	직 렬 별 ↓	계	청	회	속	업	면
				사	기	소	동
				무	관		
				국			
	행 정 · 환 경	1					1
	행 정 · 시 설	19	18				1
	행 정 · 보 건						
	사 회 복 지 · 보 건	1			1		
	사 회 복 지 · 간 호	1			1		
	전 산 · 방 송 통 신	1	1				
	공 업 · 환 경	3				3	
	공 업 · 시 설	2	1			1	
	농 업 · 녹 지	2			2		
	녹 지 · 시 설	2	2				
	보 건 · 간 호	7			7		
	보 건 · 의 료 기 술	2			2		
	보 건 · 보 건 진 료	1			1		
	보 건 · 환 경	1	1				
	간 호 · 보 건 진 료	2			2		
	의 료 기 술 · 간 호	1			1		
	행 정 · 사 회 · 간 호	1					1
8급	행 정 · 사 회 · 시 설	2	2				
	행 정 · 전 산 · 사 서	1	1				
	행 정 · 전 산 · 세 무	1	1				
	행 정 · 전 산 · 방 재 안 전	1	1				
	행 정 · 농 업 · 녹 지	5	3		2		
	행 정 · 녹 지 · 방 재 안 전	1			1		
	행 정 · 환 경 · 공 업	1	1				
	행 정 · 환 경 · 시 설	1				1	
	행 정 · 공 업 · 시 설	3				3	
	행 정 · 보 건 · 식 품 위 생	1			1		
	행 정 · 보 건 · 간 호	1			1		
	행 정 · 시 설 · 방 재 안 전	1	1				
	공 업 · 보 건 · 환 경	1	1				
	공 업 · 환 경 · 시 설	1	1				
	행 정 · 간 호 · 방 재 안 전	1			1		
	보 건 · 의 료 · 간 호						
	보 건 · 사 회 복 지 · 간 호	1	1				



기관별 →		총	본	의	직	사	읍
직급별	직 령 별 ↓	계	청	회	속	업	면
				사	기	소	동
				무	관		
				국			
	행정 · 세무 · 사회복지 · 환경	1		1			
	행정 · 공업 · 농업 · 시설	1		1			
	행정 · 공업 · 환경 · 보건	1				1	
	행정 · 보건 · 간호 · 사회복지	8					8
	행정 · 보건 · 간호 · 보건진료						
	행정 · 전산 · 방송통신 · 방재안전	2	2				
	보건 · 간호 · 의료기술 · 보건진료	1			1		
	공업 · 환경 · 방재안전 · 방송통신	1	1				
	운전	6	3		2		1
	위생	1				1	
	기계 운영	1			1		
	선박 항해 운영	1	1				
<b>9급 소계</b>		<b>202</b>	<b>139</b>	<b>2</b>	<b>17</b>	<b>10</b>	<b>34</b>
9급	행정	49	41	1			7
	세무	6	6				
	사회복지	17	9				8
	전산	1	1				
	사무	3	3				
	속공업	6	5			1	
	농업	1			1		
	보건	2			2		
	환경	3	3				
	시설	23	21			1	1
	행정 · 세무	4	4				
	행정 · 사회복지	9	2				7
	행정 · 전산	6	5			1	
	행정 · 사무	4	4				
행정 · 공업	4	4					
행정 · 농업	8			6		2	
행정 · 녹지	7	4		1		2	



기관별 →		총	본	의	직	사	읍
직업별	직 령 별 ↓	계	청	회	속	업	면
				사	기	소	동
				무	관		
				국			
	행정 · 해양수산	2	2				
	행정 · 보건	2	1		1		
	행정 · 식품위생	1			1		
	행정 · 시설	13	7			2	4
	행정 · 방재안전	2	2				
	전산 · 방송통신	2	2				
	사회 · 보건	1					1
	농업 · 녹지	1	1				
	공업 · 녹지	1	1				
	보건 · 식품위생	1			1		
	보건 · 의료기술	3			3		
	보건 · 간호						
	의료기술 · 간호						
	환경 · 공업	6	1			5	
	시설 · 방재안전	1	1				
	행정 · 세무 · 전산	2	2				
	행정 · 전산 · 공업						
	행정 · 사회 · 보건	2					2
	행정 · 사회 · 사서	1	1				
	행정 · 공업 · 녹지	1	1				
	행정 · 환경 · 공업	1	1				
	행정 · 간호 · 식품위생						
	보건 · 의료 · 간호						
	무	5	3	1	1		
	위						
	전						
	기						
	운						
	영						
	기	1	1				
	계						
	운						
	영						



기 관 별 →		총	본	의	직	사	읍
직	직	계	청	회	속	업	면
급	렬			사	기	소	동
별	별			무	관		
	↓			국			
전문경력관	소계	1	1				
나	군	1	1				
	통역요원	1	1				
별정직	계	1	1				
6급상당	소계	1	1				
비서요원		1	1				
	통역요원						
6급~7급상당	소계						
	공기업요원						
7급상당	소계						
	공기업요원						
	농기계교육교관						
연구직	계	5	2			3	
연구사	소계	5	2			3	
	환경연구소						
	학예연구소						
	행정·시설·학예연구소	1	1				
	농업연구소	3				3	
	기록연구소	1	1				
지도직	계	29				29	
지도관	소계	2				2	
	농촌지도관						
	기술 4급·농촌지도관						
	농촌지도관·농업연구소	1				1	
	농촌지도관·농업연구소·농업연구소	1				1	
	행정·농업 5급·농촌지도관	1				1	
	행정·농업·농촌지도관						
지도사	소계	27				27	
	농촌지도사	15				15	
	농촌지도사·행정	2				2	
	농촌지도사·농업	2				2	
	농촌지도사·행정·농업	4				4	
	농촌지도사·농업연구소	3				3	
	농촌지도사·농업연구소·행정	1				1	



**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 
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**

2026년 4월 29일

광양시장 권한대행 김 정 완  
부 시 장

광양시 규정 제473호

붙 임 :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

##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

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  
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6년 4월 29일

광양시장 권한대행 김 정 완  
부 시 장

광양시 규정 제474호

붙 임 :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



##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

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광양시 고시 제2026 - 111호

## 덕산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214번지 일원 덕산지구에 광양시 고시 제2022-58(2022. 2. 17.)호, 제2025-51(2025. 2. 12.)호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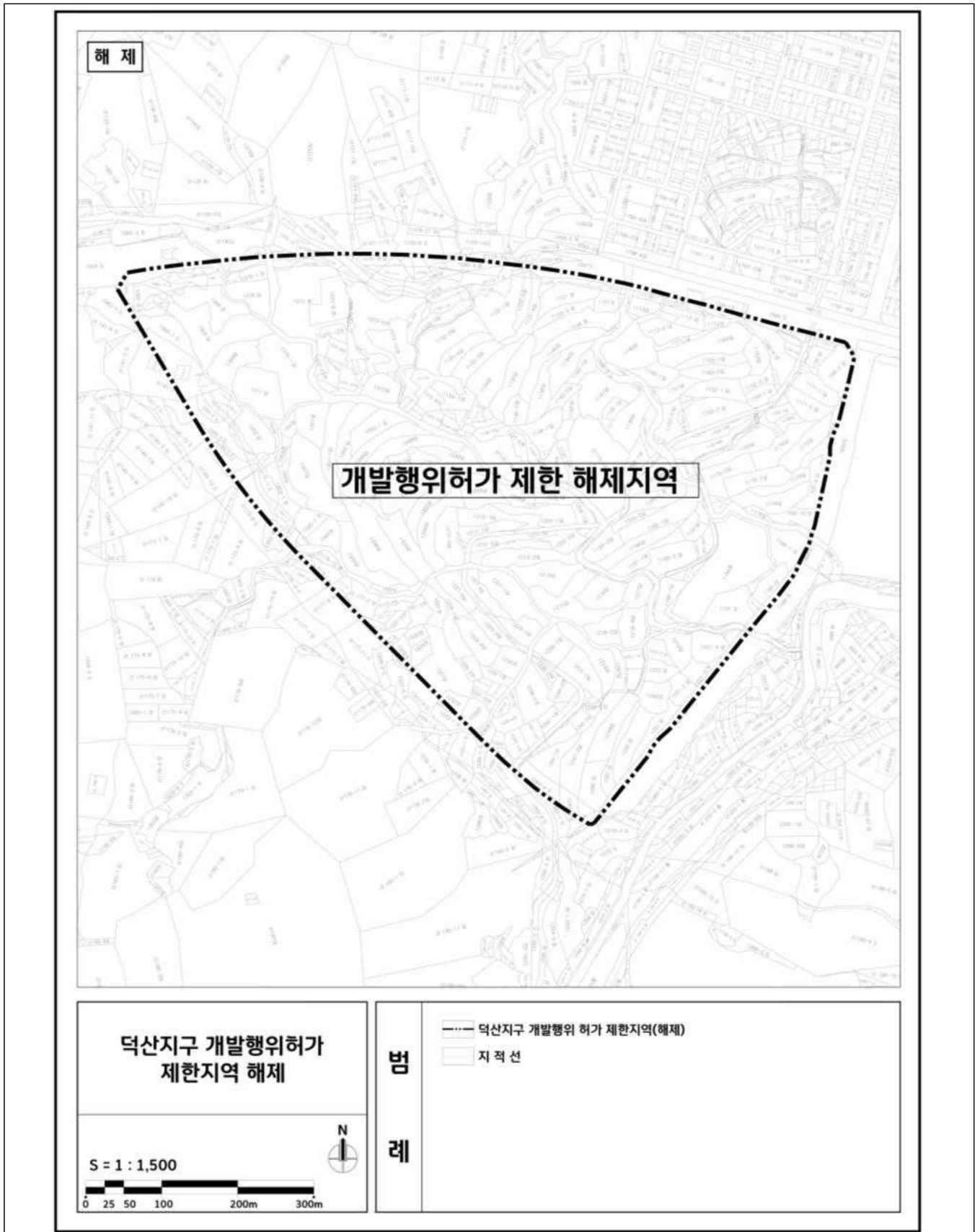
2026. 4. 29.

광 양 시 장

1. 해제위치: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214번지 일원
2. 해제면적: 431,273㎡
3. 해 제 일: 2026년 4월 29일
4. 해제사유: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미반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
5. 해제근거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3항
6. 지형도면: 붙임 참조
7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도시과(☎061-797-342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[붙임]



## 광양 성황·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른 “광양 성황·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”의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4. 23.  
광 양 시 장

### 1. 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명 : 광양 성황·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
- 나. 위치 :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일원(도이동 695-2번지 일원)
- 다. 사업규모 : 293,283㎡
- 라. 사업기간 : 2019. ~ 2031.
- 마. 사업자 : 광양시
- 바. 시행방식 : 환지방식
- 사. 승인기관 : 전라남도

### 2. 공고·공람기간 및 장소

- 가. 공고게시 : 광양시청 홈페이지 /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
- 나. 공람기간 : 2026. 4. 24. ~ 2026. 5. 27.(21일간, 공휴일·토요일 제외)
- 다. 공람장소 : 광양시청 산단택지과 / 골약동주민센터
- 라. 공람내용
  -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요약서 / 공고문 / 주민의견 제출서

### 3. 설명회 개최계획

- 가. 일시 : 2026. 5. 7.(목) 14:00 ~
- 나. 장소 : 광양시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2층 세미나실(광양시 성황도이로 66-22)

### 4. 주민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간 :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만료일 후 7일 이내
- 나. 제출방법 : 공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(광양시,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)에 첨부된 제출서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
- 다. 제출장소
  - 1) 인편 및 우편 : 광양시청 산단택지과(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410, 광양커뮤니티센터 4층)
  - 2) 전자우편 : ssocuri@korea.kr
  - 3)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


## 5. 기타사항

가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산단택지과 택지개발팀(☎061-797-3431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

## 도 로 지 정(변 경) 공 고

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(신축) 신고사항변경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(변경)공고 합니다.

2026. 4. 29.

## 광 양 시 장

1. 공 고 명: 도로지정 공고
2. 지정근거: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, 제45조 제1항
3. 공고기간: 2026. 4. 29. ~ 2026. 5. 13.(14일간)
4. 도로지정 공고내용

건축위치	도로위치	길이	너비	면적	소유자	이해관계인 동의여부
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산119-1번지	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산119-1, 산119-113 번지	450m	6m	3,103㎡ (산119-1:2,812㎡, 산119-113번지:291㎡)	강○미 외 31인 강○미 외 25인	동의

5. 공고방법: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(☎061-797-287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

30304-26822대  
98.12.28 재정승인

210mm×297mm  
(보존용지(2종) 70g/m<sup>2</sup>)



광양 도시관리계획(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광양시 진월면 망덕리, 선소리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니 주민과 이해 관계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4. 29.

광 양 시 장

1. 주요 변경내용

가. 용도지역: 변경 없음(준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)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: 변경 없음(208,381㎡)

다.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: **변경**

○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주A	주차장	진월면 망덕리 4-83답	-	증)1,358	1,358	-	

○ 주차장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주A	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설</li> <li>- 위치 : 진월면 망덕리 4-83답</li> <li>- 면적 : 1,358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문화공원 폐지 후 주차장으로 변경</li> </ul>

○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문195	공원	문화공원	진월면 망덕리 4-83답	1,358	감)1,358	-	광양2025-138호 (25.5.1)	

○ 공원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문195	문화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폐지</li> <li>- 위치 : 진월면 망덕리 4-83답</li> <li>- 면적 : 1,358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문화공원 폐지 후 주차장으로 변경</li> </ul>

라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(변경)

○ 주차장용지(E)



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		비 고
		위 치	면적(㎡)			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계	7,275	-	5,917	증)1,358	7,275	
E1	3,000	진월면 망덕리 5-6대	3,000	-	3,000	
E2	2,917	진월면 망덕리 73-1답	2,917	-	2,917	
E3	1,358	진월면 망덕리 4-83답	-	증)1,358	1,358	

마.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(변경)

○ 주차장용지(E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		용 도	• 주차장용지의 건축물의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.
		건폐율	• 60% 이하
		용적률	• 250% 이하
		높 이	• 4층 이하
		배 치	-
		형 태	-
		색 채	-
		건축선	-

2.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세부조서 및 관계도면:

계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3. 열람기간 및 장소 등

가. 열람기간: 2026. 4. 29. ~ 2026. 5. 13. (14일간)

나. 열람장소: 광양시청 도시과

다. 의견제출 장소: 광양시청 도시과(광양시 행정2길 5, 5층)

4.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내용은 광양시청 도시과(☎061-797-3426) 및 관광과(☎061-797-195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# 구거(농업생산기반시설)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거(농업생산기반시설) 내 불법행위 점·사용 행위자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 128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 하였으나, 행위자,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9일

## 광 양 시 장

1. 공 고 명 : 구거(농업생산기반시설)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
2. 공고기간 : 2026. 4. 29. ~ 2026. 5. 15.[16일간]
3. 공고장소 : 전남 광양시 시보,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관련근거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8조
5. 공시송달 대상

연번	행위자	위치(인접 필지)	위반내용
1	미상	전남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103 (인접: 우산리 96-8)	구거 내 컨테이너 1동
2	김건식	전남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41-3 (인접: 부저리938-4)	구거 내 가설건축물 1동
3	미상	전남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561-3 (인접: 구서리 558-14)	구거 내 비닐하우스 설치 1동
4	미상	전남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561-2 (인접: 구서리557-3)	구거 내 가설건축물 1동
5	미상	전남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 42-17 (인접: 금이리 43-24)	구거 내 가설건축물 1동
6	곽찬재	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145 (인접: 청암리 1089-2)	구거 내 컨테이너 1동
7	김형선	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130 (인접: 청암리 1041-1)	구거 내 컨테이너 1동
8	우성민	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130 (인접: 청암리 906-1)	구거 내 컨테이너 1동
연번	행위자	위치(인접 필지)	위반내용



9	백광수	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130 (인접: 청암리 855-1)	구거 내 가설건축물 1동, 컨테이너 1동
10	박귀열	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130 (인접: 청암리 802-1)	구거 내 가설건축물 2동
11	이면재	전남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138 (인접: 청암리 813-1)	구거 내 가설건축물 1동, 컨테이너 1동
12	하임술	전남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267 (인접: 월길리 231-7)	구거 내 컨테이너 1동

## 6. 고지사항

- 가.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며,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8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,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.

## 7. 의견제출: 불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. 5. 26.(화)까지 제출(방문 또는 우편)

- 주 소 :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, 4층 / FAX (☎061-797-2588)

※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.

## 8. 문의처: 광양시청 건설과 농업기반팀(☎061-797-2833)

## 9. 위치도 및 사진대지: 별첨. 끝.

